

【 1 】 제18회의회(임시회) 회기결정의건

제의년월일 : 1993. 5. 10

제 의 자 : 의 장

제안이유

제18회 임시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안건심사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기 위함임.

주요골자

- 회기 : 1993. 5. 11 ~ 5. 13 (3일간)

【 2 】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

발의년월일 : 1993. 5. 7.

발 의 자 : 권선안의원외 1인

주 문

군정에 관한 질문을 위하여 군수 및 군 본청의 실과소장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함.

제안이유

군정에 관한 질문과 집행부측의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파악하고 군민을 대표한 의회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과 양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와 군 본청의 실과소장 등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임.

의제별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서

의 제 별	일 시	출 석 요 구 공 무 원	비 고
-------	-----	---------------	-----

군정에 관한 질문	1993. 5. 12 14 : 0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군 수 ◦ 기획실장 ◦ 문화공보실장 ◦ 내무과장 ◦ 새마을과장 ◦ 재무과장 	
군정에 관한 질문	1993. 5. 13 10 : 0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사회과장 ◦ 환경보호과장 ◦ 가정복지과장 ◦ 산업과장 ◦ 지역경제과장 ◦ 산림과장 ◦ 건설과장 ◦ 도시과장 ◦ 주택과장 ◦ 보건소장 	

【 3 】 양주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증개정조례안

제출년월일 : 1993. 4. 22.

제출자 : 양주군수

제안이유

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에서 규제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, 연구, 의결을 함에 있어 위원회의 기능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.

주요골자

가. 군정조정위원회의 결정사항을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정책에 관한 사항과 군단위 심의회에서 처리할 사항중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아니한 소관 사항임 (안 제3조)